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7.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토요전일근무시 근무시간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근거 마련(안 제16조의 2)

다. 연가일수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라. 성실근무자 인센티브(안 제18조제3항)

마. 반일연가제 도입(안 제19조제3항)

바. 병가활용기준 강화(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사. 시테크제 도입(안 제21조제1항)

아. 국가적 행사 참가의 공가인정(안 제22조제8호)

자. 재해구호휴가 신설(안 제23조제9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를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기타복무사항"을 신설한다.

제28조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비 고</th></tr>
<tr><td>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서신설)</td><td>제13조(근무시간) ① -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년이상 2년미만	10일	- - - - - - - -	- - -	
2년이상 3년미만	13일	- - - - - - - -	- - -	
3년이상 4년미만	16일	- - - - - - - -	- - -	
4년이상 5년미만	19일	- - - - - - - -	- - -	
5년이상 6년미만	22일	- - - - - - - -	- - -	
6년이상	23일	- - - - - - - -	- - -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 - - - - -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생 략) 〈 신 설 〉 ③·④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 신 설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병가) ①- -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1.~7. (생략) 〈 신 설 〉	제22조(공가) -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

록 要求하거나, 政治的行爲의 報償 또는 報復으로 利益 또는 不利益을 約束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8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73·3·12〕

第59條 (委任規定) 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大統領令이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66·4·30〉

第7章 身分保障

第60條 (身分保障의 原則) 公務員은 刑의 宣告·懲戒 또는 이 法이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級公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4·20〉

第61條 (當然退職) 公務員이 第31條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第62條 (職權免職) ①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개정 73·3·12, 81·4·20, 91·5·31〉

1. 및 2. 削除 〈91·5·31〉
3.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및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減少等에 의하여 廢職 또는 減員이 된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추 14)

第19條 (公團의 收入·支出) ①公團의 收入은 寄與金·負擔金·公務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移入充當金·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補助金 기타의 收入金으로 하고, 支出은 이 法에 의한 給與金·積立金·還付金 기타 公團의 運營을 위한 經費로 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公務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은 前年度 基金運用收益金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總務處長官이 정한다. 〈新設 95·12·29〉

第20條 (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 會計年度末에 決算上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基金의 收入으로 하여야 한다.

第21條 (公團業務의 委託) ①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의 一部를 遞信官署·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84·7·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業務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章 在職期間

第23條 (在職期間의 計算) ①公務員의 在職期間은 公務員으로 任命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死亡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年月數에 의한다. 〈改正 95·12·29〉

②退職한 公務員·軍人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公務員으로 任用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年金法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을 第1項의 在職期間에 合算할 수 있다.

③公務員으로 任用되기 전의 兵役法에 의한 現役兵 또는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官의 服務期間(防衛召集에 의하여 實役에 服務한 期間을 포함한다)은 第1項의 在職期間에 算入한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과 法律 第3586號 公務員年金法改正法律 附則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은 第4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는 第1項의 在職期間에 이를 合算 또는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1·1·14〉

(추 67)

무사 전송
송신 나480
전문번호 87

" 입등 경기 · 임류 한국 "

경 기 도

우441-70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 ☎ (0331) 8-4781 / FAX 9812 / 담당 김종규

문서번호 총무 12100 - 16

시행일자 1997. 1. 4

(경 유)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총무, 내무과장

선결	국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1997. 1. 4	결재·공람	과장	
		17/26		계장	
처리과		총무과			
담당자		한정주			

제 목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시달 ※조례개정근거

1. 내무부 지공 12100-574 ('96. 12. 27)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시 · 군에서는 동 조례 개정 및 공포 · 시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포예정 보고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내 무 국 장 전결

받 는 곳 : 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주식시간"을 각각 "중식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도지사 · 군수 ·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 · 군수 ·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 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에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월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 ---------- ---------- ---------- --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②중식시간---------- ---------- ---------- 중식시간 ---------.
< 신 설 >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도지사 · 군수 ·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 · 군수 ·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재직기간----------.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재직기간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②------- 재직기간이라 함은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연가는 오전 또는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 신 설 >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	제21조(병가) ①---------- ---------- ---------- ----------

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	⑥---------- 재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직 ---------- 장기재직휴가 ---------- 재직기간 ----------.
⑦·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30일 ----------.
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외여행) ----------.